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병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,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골재채취사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완화함(안 제5조제3항)

나. 점용료 가산금징수, 요금 부과·징수 근거법령 정비(안 제5조, 안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골재채취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현실화하고, 가산금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행 1억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현실화 하였으며,
- 가산금 등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,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